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업인력 재교육·재훈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산업발전법에 신설됨에 따라 실시기관,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산업인력 재교육·재훈련 실시기관,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
- 1) 실시기관은 산업분야별 사업자단체, 대학,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, 실시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산업발전법 제1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3. 8. ~ 4. 1.) 실시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및 방법·절차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(이하 “재교육훈련”이라 한다)의 실시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.

1.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원격대학 및 기술대학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인력의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

②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산업인력의 재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교육훈련의 인원 및 실시방법 등을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재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훈련의 기본방향
2.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3.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은 법 제12조의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인력의 재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및 방법·절차 등) ①</u>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(이하 “재교육훈련“이라 한다)의 실시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.</u> <u>1.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</u> <u>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원격대학 및 기술대학</u> <u>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</u> <u>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인력의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</u>

②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산업인력의 재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교육훈련의 인원 및 실시방법 등을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재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훈련의 기본방향
2.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3.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
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은 법 제12조의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인력의 재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221